

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

「농어촌정비법」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2월 12일

진도군 

1.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: 2024. 12. 12. ~ 2024. 12. 26.

2.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 현황

구 분	사용허가 내역	비고
사용허가 사유(목적)	가설건축물 설치 및 부지 사용	
사용허가 대상 / 사용면적	의신면 칠전리 1947-6 구거 / 21,744 m ² 중 20 m ²	
사용허가 내용.방법	부지는 콘크리트포장 및 가설건축물 설치.	
사용허가 기간	허가일로부터 3년	

3. 열람장소 : 진도군청 건설과 기반조성팀

4. 의견제출 : 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(방문 또는 우편) 제출하시기 바라며, 기타 사항은 진도군청 건설과 기반조성팀(☎061-540-3485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불 임 : 1. 주민의견서 서식 1부.
2. 위치도 1부. 끝.

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서			
성명 및 단체		연락처	
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		
주 소			
주민의견 사항			
관련 공고번호			
진도군 공고 제2024 - 1068 호			
위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견서를 제출합니다.			
20 년 월 일			
신청인		(서명 또는 날인)	
진도군수 귀하			

위 치 도(의신면 칠전리 1947-6)

